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

(심현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22 발의 연월일: 2020년 03월 10일

발 의 자: 심현정,전수일,이명순(3인)

1. 제안이유

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권익 보호, 지위 및 복지향 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~2조)
- 나.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, 지위 및 복지향상,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함을 내용으로 한 군수의 책무와 임업인 등의 책무규정 (안 제3조)
 - 다. 사업비 지원범위(안 제4조)
 - 라.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경비지원 규정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 : 2020. 02. 19. ~ 2019. 03. 09.(20일간), 제출된 의견 없음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0. 02. 05. ~ 2020. 02. 12., 제출된 의견 반영

조례명 "육성" 추가

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,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임업관계자"란 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임업인"이란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임업후계자"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4. "독림가"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5. "산림관련단체"(이하 "단체"라 한다)란 평창군산림조합, (사)한국 임업후계자협회 평창군지부 등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(산하 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말한다.
- 6. "임업인 등"이란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) ①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, 지위 및 복지향상,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

여야 한다.

-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,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평창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지원범위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2.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3.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5조(임업인 등 경비지원)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1.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
 - 2. 임업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
 - 3.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
 - 4. 그 밖에 신기술 확산, 판로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

- 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1.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
- 2. 임산물의 판매·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·소비·홍보사업
- 3.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(포럼, 심포지엄, 대회, 대전 등) 개최 지원
- 4.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 · 외 연수사업
- 5. 산림관련단체의 산업·교육·문화·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
- 제6조(다른 조례의 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, 관리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 법령]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(약칭: 임업진흥법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8. 12. 26., 2010. 2. 4., 2013. 3. 23., 2016. 5. 29., 2017. 3. 21., 2019. 1. 8., 2019. 12. 3.>

- 1. "임업"이란 영림업(「산림문화・휴양에 관한 법률」과 「수목원・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휴양림,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・운영을 포함한다), 임산물생산업, 임산물유통・가공업,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.
- 2. "임업인"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- 3. "임산물"이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.
- 3의2. "특별관리임산물"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 (건조된 것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- 3의3. "산양삼"이란 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, 이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(科) 인삼속(人蔘屬) 식물을 말한다.
- 3의4. "임업기계장비"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,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임업후계자"란 임업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
- 5. "독림가(篤林家)"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.
- 6. "산촌"이란 「산림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
- 7. "산촌진흥지역"이란 「산림기본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

한다.

8. "산촌진흥특화사업"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 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제5조(임업인 등 경비지원)
 - 임업관계자 보조금 지급
 - 산림관련단체 보조금 지급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·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4